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‘행정규칙상 장애인 비하 용어 정비방안(법제처)’에 따라 “맹인용”을 “시각장애인용”으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　　타 : 1) 신・구조문대비표 별첨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370호

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 표 도로 및 포장공사의 작성도서란 중 “맹인용”을 “시각장애인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